

## 건강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의 확대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김 은 경(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가정의 달인 5월, 달력에 있는 수 많은 ‘날’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생겨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겨났다는 것은 가족이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가 가족의 문제에 지원을 하여야 함, 즉 우리의 가족이 그만큼 많은 몸살을 앓고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가정지원법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일반가정으로 확대시키고 사전예방적 가족정책을 명시한 최초의 법으로 ‘선가족지원 후사회복지’의 소극적인 가족정책을 일관해 온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을 되돌아볼 때 이와 같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가족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오늘 가정관리학회 실천 1분과의 발표 주제들은 건강가정법이 시행(2005년 1월 1일)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을 돌아보고 건강가정지원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차별성 그리고 건강가정사의 역량강화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 위치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윤경자 교수님의 ‘건강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의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는 그 시기적절성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가족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 명쾌하게 정리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법의 제정 배경과 이 법이 기존의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어떤 차별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였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사업, 운영과 예산, 그리고 건강가족정책의 확대를 위한 가족전문가의 역할과 실천적 참여의 부분까지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건강가정지원법 제정 이후 나온 대부분의 논문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법을 연결하여 이론적인 지향점을 제시한 논문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고 우리사회에서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건강가정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연결시킨 점에서 윤교수님의 발표문은 매우 반가운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발표문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선, 발표문의 중심이 가정정책 그 자체인지 가족정책으로서의 건강가정정책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만일 연구자의 논문이 가족정책이 아니라 가족정책으로서의 건강가정기본법과 그의 실천으로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더 focus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내용을 적절히 반영한 제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발표문에서 언급한 가족

정책의 가족학적 관점과 가족학 영역의 연구결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최적가족 기능은 발표자의 가족 정책의 정의와 방향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발표문에는 이론에서 실천에 이르는 많은 분량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1개의 논문이 아니라 2~3개의 논문으로 나누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발표논문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가족정책과 건강가정기본법 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정의 원활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가정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가정경제나 소비, 식생활 및 의생활 분야 등과 연계하여 좀 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가족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부분과 관련된 교육이나 먹거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 등도 좋은 program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가정의 요소 중 경제적 안정과 협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되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가정경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실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신분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과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건강가정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이들의 신분문제이다. 위탁운영이든 직영이든 상관없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들의 신분은 모두 계약직(직영으로 할 경우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이다. 2007년 7월 1일 실시된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근로 계약으로 간주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되어있다. 즉 2007년 7월 1일부터 2년이 지나는 시점인 2009년 7월 1일이 되면 그 때까지 2년 이상 근무한 건강가정사를 고용하고 있는 센터들은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하거나 그 이전에 해직시켜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직영으로 운영을 하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으로 전환을 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2009년 7월 1일이 되면 이들의 고용승계를 떠안아야 하는 위탁 기관들(특히 대학교들)과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천 현장의 최전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들의 고용상의 불안전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실시하는 다양한 건강가정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수년의 경력을 가진 건강가정사들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 센터, 학자, 학회, 건강가정사협회 등에서 함께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전문가들의 가족정책 확대에의 참여와 함께 우리가 배출한 건강가정사의 전문성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올해부터 건강가정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신규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설립은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건강가정사 채용의무 조항이 없고, 위탁을 받은 곳이나 시군에서 직영을 하는 곳에서도 직원채용시 사회복지사에 대한 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위탁을 받은 센터들은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을 재배치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사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학문분야의 전문성과 건강가정 형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와 앞으로 생겨나게 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도 건강가정사들이 의무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문의 실천성이 중요시 되는 요즘 이는 우리 학문의 존립과도 중요한 관계가 된다고 본다. 최근 대학의 기능이 무엇인지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취업률 공시제로 인해 지방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의 취업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건강가정사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우리 학문분야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도 건강가정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 분야의 학자들이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이나 센터의 수탁과 건강가정사의 배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초점을 두고 힘을 기울여 왔다면 이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이 안정화·내실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사 협회, 건강가정지원센터 협의회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족학자 및 가정학계 학자들이 지역사회 가족복지의 최전선에 뛰어들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유치, 운영하고 계신 것에 대해 찬사를 드리고 싶다.